투자권유준칙(규정)

1 .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Ⅱ.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라
 -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 대출성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 ☞ 금소법 제2조제9호 및 금소법시행령 제2조제10항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사항 6-1]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 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 나.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 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 (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 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2023. 7. 10. 개정)
-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별지 5>의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IV.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 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2>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용)를 이용 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하다.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 제4-78조의2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의2호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2> 투자성 상품의 고객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 금소법 제17조제3항
- 2)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 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사항 10-1] 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 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

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나.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5) 임직원 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4>의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가. 교부 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나.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상품은 제외)을 판매하거나 모든 개인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 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제2-3호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 1)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 2>의 투자성 상품의고객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과 <별표 6>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2024. 6. 11. 개정)
- 2) 임직원 등은 만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숙려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2>의 투자성 상품의 고객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및 <별표 4>의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소법 제21조, 금소법시행령 제16조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 하는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개인정보 취득경로,권유 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 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2023. 7. 10. 개정)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신탁계약
-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2항
- 마.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상품을 안내하 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과 금소법시행령 제16조제3항
-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금소법 제21조제3호,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4호
-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5항
-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 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13의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1)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 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 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 2)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
- ☞ (참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현황 등은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주기, 공시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음

13의3.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권유 시 유의사항

- 1) 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시 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구분: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
- 나.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적용 배제 단, 투자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적용가능 함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적용 가능
- 다. 그 밖의 투자절차: 투자권유 준칙의 IV.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판매 절차를 준용
- 2)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에 설명서 작성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 고객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가. 금융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 나. 수수료, 계약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다. 증권의 환매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라. 금융상품의 구조, 기대수익
- 3) 회사는 공동업무 집행사원과 업무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규약)에 금소법 제4장의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공동GP의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025. 2. 10. 개정)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별지 3>의 설명서 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 확인서에 서명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2023. 7. 10. 개정)

-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대출성상품에 관한 계약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2항
- 4)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5) 임직원 등은 1)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 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법시행령 제132조제2호
 -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 법시행령 제132조제3호
-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4항, 금소법감독규정 제13조제2항
- 7)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3항
- 8) 임직원 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9조 제3항

9)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혜지 여부, 환혜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혜지비율, 환혜지 대상 통화, 주된 환혜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 할 수 있다는 사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혜지 여부 및 혜 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 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 2) 임직원 등은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별표 7>의 금융감독원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기공일-00605, '15. 8. 5.)"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024. 6. 11. 개정)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투자성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 1)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표9>의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 13③) 및 감독규정(§ 12)
- (2024. 3. 1. 개정), (2024. 6. 11. 개정), (2025. 2. 10. 개정)
 -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 위험 등급은 최소 6단계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표3>의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2024. 3. 1. 개정), (2025. 2. 10. 개정)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①. 계약서류의 교부

-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시행령 제22조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등을 제공해야 한다. ☞ 금소법감독규정 제21조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금소법시행령 제22조
-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 금소법시행령 제22조

17-②. 청약의 철회

-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별지 6>의 신청서를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② 및 17-③에서 '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 1)-① 다만,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②에서 '금전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 금소법시행령 제37조
- 1)-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1)-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 2)-①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 금소법시행령 제37조
- 2)-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금소법 제46조
-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 금소법 제46조
- 4)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7항

17-③. 위법 계약의 해지

-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별지 7>의 신청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 간을 포함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 이 발생할 것
-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7>의 통지서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금소법감독규정 제31조
-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법 제55조

1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 2)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 3) 부당한 권유 금지
 -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 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 배분의 전략.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 상, 발행 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

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 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 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 니 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 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
-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 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 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 "로보어드바이저" 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 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 실적의 평가 및 투자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 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 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 명 발법 제97조, 법 시행령 제98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 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 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 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금소법 제17조 제2항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 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025, 2.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법 제60조, 영 제62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
-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 금소법 제2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 (2023. 7. 10. 개정)
-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제3항
-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8조제3조, 제4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제4항

25. 국내 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채권의 거래 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 나. 채권의 매매수익률(판매금리), 매매단가(판매단가)
- 다.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판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 라.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간의 관계 등 채권 투자위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2) 임직원 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 채권 가격 변화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시 만기 30년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하여 자료 작성일 기준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 자료를 제공
 - 나.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다. 고객이 매도 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 라.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 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 만기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3) 과거에 투자권유 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거 투자권유 하였으나 현재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임박한 채권, 단순히 판매 물량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된 채권 등 투자자 보호 사유가 없는 채권은 제외
 - 투자자 보호 사유는 발행사 부도, 투자 적격·부적격 등급 하락 등 기타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이벤트를 의미
 - 투자자 보호 사유 발생으로 인한 투자권유 중단 시 개별통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2.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8. 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사항 중 제5조 ④항, 제 17조⑦, ⑧항의 개정 사항과, <별지 6호>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의 양식변경은 2014.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1.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4. 부터 시행한다. (전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2.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1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7. 20. 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사항 중 <별지11호>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대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은 영 제 3조의3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7. 6. 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사항 중 24조 판매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은 2021. 9.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9.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4.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7.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02. 10. 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사항 중 <별표9>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의 RP위험등급 변경 적용은 2025. 3. 31. 부터 시행한다.

참고 목차

- <별지1>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성, 대출성상품)
- <별지1-1>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대출성)상품 거래확인서
- <별지2>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 <별지3> 설명서 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 확인서
- <별지4> 적합성보고서
- <별지5> 적정성판단보고서(투자성, 대출성상품)
- <별지6> 청약철회신청서
- <별지7> 위법계약해지요구신청서, 위법계약해지요구관련통지서
- <별표1> 투자자성향분류표
- <별표2> 투자성 상품의 고객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 <별표3>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별표4>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기준
- <별표6>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
- <별표7>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 <별표8>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 <별표9>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성상품]

□ 개인 □ 법인

BNK투자증권

※ 본 확인서는 투자자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향후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투지	투자자구분 □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체크 시 일반금융소비자 대한 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	□ 해당 □ 미해당	HƏTI C				
	만 작성) 위 희망 여부	*고령투자자, 금융상품 가입 무경 □ 희망 □ 미희망(일임형상품 첫					
	보 제공 여부		^{∭그 물기} 존정보와 동일 □ 미제공(적정성원칙 대상상품 체크	 3 불가)			
□ 트지권으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ㅡ '저저 <u>ㅎ보는 세명에서 많다</u> 보 미제공시 당사는 '적합성원칙' 준 :	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및 부적합상품 권유 금지	1			
' -	–	까지 당사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 J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 결정을 표정하지 않는 정부 경자는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등 중요사항을 4					
		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					
* 본인은 상	기내용을 설명	듣고 자필기재 하였습니다. <u>고</u>	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u>(인/서명)</u>			
		투자자	정보 확인				
		인 정보	법인 정보				
연령	1. 연령 □ 만19세 이하 □ 만20~30세 □ 만31~54세		1-1. 총 자본금 현황 □ 200억 이상 □ 100억 이상~200억 미만				
	□ 만55~64세 □		□ 50억 이상~ 100억미만 □ 1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미만				
투자	2 트자하신 자근	의 투자 가능 기간					
무사 예정기간			2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				
		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복수 선택 가능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가 노의 하사레, 레궈형퍼드, 워크브제	사형 디오드				
	ŕ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등 □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	당수익률 수준의 수익률추구 주식형 펀드 등				
투자경험	□ ELW, 선물옵션	1,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u>=</u>			
	4.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 전혀없음 □ 1	년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이상				
		취득 및 처분 목적					
		생활비 □ 주택마련 □ 여유자금 □ 자신					
	· ,	암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애 대칭 지사 A.K.	· 펀드에 투자한 경험 (년 개월)				
금융지식		에 대한 지식 수준 베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수준 및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이해도	□ 널리 알려진 급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	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E 7 0 7	7. 투자수익·위험						
투자목적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 □ 원금보 	변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재산상황	8. 총 자산규모(순자산) □ 1억 미만 □ 1억~2억 미만 □ 2억~5억 미만 □ 5억~10억 미만 □ 10억 이상 □ 100억~200억 미만 □ 200억 이상 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기대이익 및 손실수준	10. 기대이익 수준 □ 원금기준 10%범위 □ 원금기준 20%범위 □ 원금기준 30%범위 □ 원금기준 50%범위 □ 원금기준 100%범위 11.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亡岂于正	□ 원금기준 -10%범위 □ 원금기준 -20%범위 □ 원금기	[준 -30%범위 □ 원금기준 -50%범위 □ 원	금기준 -100%범위				
■ 제공 정보	에 대한 고객 확인						
2. 제공한 정	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 보는 제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유효하며 본인의 투지 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해야 귀/	사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고	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인/서명)				
□ [금융상품	품지식 수준, 위험에 대한 태도]당일 재변경시 :	기재사항					
	아입을 위한 의도적 투자자정보 변경은 투자위험을 크 보를 변경합니다.						
	<u>⊒</u>	<u> </u>	(인/서명)				
010171							
위임장			본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CC3-1 C/1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	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히	가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u> </u>	객명 :	(인/서명)				

투자자정보확인서[대출성상품]

BNK 투자증권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여 주	5시기 바랍니	다.					
		□ 개인 □ 법인	<u> </u>				
투자	자구분	□ 일반금융소비	l자				
		□ 전문금융소비	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체크 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 규제기	•				
투자자 정보	리 제공 여부	□ 신규제공 □	정보 변경 □ 기존정보와				
			투자자 정보 혹	<u></u> ∤인			
		개인 정보		법인	정보		
	1. 신용거래	(복수 선택 가능)					
대출용도		- □ 주식 대주					
		출 (복수 선택 가능					
		S'품 배수 U 가게	자금 🗆 법인 자금 🗆 기타				
연령	2. 연령대	VF 30 H					
5.8			만 31 이상~50세 미만 만 65 이상~79세 미만				
	□ 만 80세	- "	C 03 018 13/11 01C				
	3. 자산규5			3-1. 총 자본금			
	□ 1억원 미만	_		□ 5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	마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	l만		
	□ 10억원 이성	ŀ		□ 200억원 이상			
	4. 연간소	=					
투자경험	□ 3천만원 미년						
17400		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	상~1억 미만					
	□ 1억 이상	.					
	│ 5. 부채현	람					
	□ 1억원 이상	~ 5억워 미마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성						
	6 그저지초			6-1. 연간 순이익에 대한	예상		
	6. 고정지출 □ 3천만원 미년	Dŀ		□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	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 상~5천만원 미만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신용점수	□ 5천만원 이:			□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	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 1억 이상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연간 순이익이 거의 빌	사내하다! 아우		
		7.1		□ 현재 한번 문이들이 기기 글	1301AI IS		
		_ 점 요정스느 시요야?	전 계얀 체격 저 히사에서 결	후후 확인합니다.(법인 제외)			
변제계획			3 개국 제골 년 되자에서 = 대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		1		
					,		
	1에 대한 확인 트자경헌 변	제계회 등이 저브	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을 확	이렇니 IT!			
	– – . –			단합니다. 다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		, _, _,					
3. 정보에	대한 변경사형	방이 발생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 줄 🧵	선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대리인의 경	우 대리인명):	(인/서명)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	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	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8	»을 것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			(인/서명)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서



-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 고객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 2.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의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및 부적합상품 권유 금지
- 3.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 의무 : 금융상품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원칙* 대상 투자성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원칙(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 할 의무

투자하려고 하는 금융투자 상품명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자필 기재)

투자자 성향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 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 하고,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인/서명)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인/서명)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대출성상품 거래 확인서

BNIK 투자증권

-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대출성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고객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1. 대출성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대출성상품은 원금 손실 또는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거속됩니다. 3.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대출성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용거래 (복수 선택 가능) □ 주식매수 □ 주식대주 1-1. 담보대출 (복수 선택 가능) □ 금융투자상품 매수 □ 가계자금 □ 법인 자금 □ 기타 투자하려고 하는 금융투자 상품명							
투자자 성향				대출성성	상품 위험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	다성 상	 품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	l중립형	안정추	구형	안정형	
상품등급 매우높은위	험	높은위험	다소	높 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 하고,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인/서명)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			(인/서명)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재

-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 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 된 답변 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 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 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L 투자자이 재무형	[화·		

1.	재	무	현	횡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Ⅱ.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Ⅲ.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		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 장	외 파생상품거래의	이 조건과 그에 수빈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피 합니까?	·생상품이 ·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 드린 것 입니다.
- 2. 향후 OO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BNK투자증권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00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지점/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참고사항〉

※ 예시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참고1]의 투자자 확인(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고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설명서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확인서

BNIC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시어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성상품 우	l험등급
----------	------

◆ 금융투자상품명:_____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단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설명서 교부 및	! 설명내용 고객	확인 (호	희색 자필기	재 및 🗆 🖰	부분 √ 표/	۸I)			
투자자 유형	□ 일반금융소비	자	□ 전문금	응용소비자 (□ 개인 [□ 법인)			
계약 서류	■ 판매직원으로			•	•	관, □ 설명	l서 (핵심	님(요약)설딩	병서
교부 확인	포함), □채권 부 ★ 해당 서류는 법령	•		•					
	■ 위 상품의 내용	용, 핵심 투	■자위험(신원	용위험, 시징	위험, 환위	험 등), 원	금손실	가능성 (여	다자
일반	보호법상 보호성 설명에 관한 사형	•	•	•		데·해지, 축	취약 금융	중소비자 유	2선
금융소비자	■ 위 상품의 투기					위험)	으로 초	대원금전:	<u> </u>
	손실이 가능하며								
 전문금융소비자	■ 위 상품은 원급						아니며, 5	투자손익에	
및 권유북원고객	대한 책임은 투기 ■ 본인은 <mark>상품에</mark>						않았습L	JCI.	
	금융상품 가입에								
취약금융소비자	*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법상 보호받기	지 못하는 등의	투자에 따른	주요위험			
* 예금자보호법에 따 담보금, 비과세종합	른 보호상품: 현금0 저축 등 저축자예수금		다예수금, 수익	l자 예수금) d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야	담보금 등	일부
사모 펀드	위 사모펀드 가입								
가입 고객	아니하고, 별도로	로 요정(서	면, 이메일,	문사 등) ਰ	1는 경우 석				_
						20	년	월	일
그게 취심				고객(분	본인)성명:			(서	명)
고객 확인				CH	리인성명:			(서	명)
				-11	-1200.			(* 1	0)
◆ 판매직원 확인									
■ 본인은 투자지				-					
하고, <u>상품 설명</u> 또는 환매 조건									_
프는 판매 소신	등을 중正이 1	<u> </u>	, 1/40	<u> </u>	할 중正이	OT OIL OF TO		12 8	
■ 본인은 투자지	h에게 위 상품 <u>9</u>	의 <u>설명</u>	<u> </u>	I자료(<u>거래침</u>	한고지표) 를			QI.	01
파메지 하이	TITA		TI OI		0.2	20	년	월	일
판매자 확인	지점:		_ 식위 : _		이듬 :			(서명)

적합성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투자정보 확	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투자자	정보 확인서 결과			
■ 고객의 투자	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 ○○○형은 투자성향입니다. ※[별표1] 투자자 성향 분류표 참조하여 작성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	합증권			
■ 투자권유 사	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기 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권을 추천하였음	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			
	※ 투자자 수요를 감안 하여 해	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 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 하여야 할 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참고사항					
	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0			
		l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 만을 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적정성 판단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고객정보 확인결과								
E YOY YUZH	고객 정보							
 고객 연령:								
투자 기간:								
해당 금융상품 이해도: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보유자산 등:								
위험에 대한 태도: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종 합	□ 적정	□ 부적정						
이 유 고객성향에 비해	금융투자 상품의 역	위험등급이 높아 박	부적정함을 기재					
■ 참고 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 경우에 제공하는	오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않거나, 정보가 변경	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	와 관련하여 동 사항	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참고사항								
※(예시) ① () 개 항목 충족/미충족			()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운에 따듬(아래 표 적정성 판 (· · · · · · · · · · · · · · · · · · ·	ᇚᄎᅎᅟᆡ					
고객 정보 고객 연령:	작성성 전		미충족 사유					
투자 기간:	□충족 □미충족	1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 '						
보유자산 등:								
(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	□충족 □미충족	() 점						
위험에 대한 태도:	□충족 □미충족	()점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충족 □미충족	()점						
종 합	□적정 □부적정	총	점()점					

(신용공여)적정성 판단 보고서

■ 고객정보		П							
고객명 :			계좌번호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대출 용도:									
연 령:									
보유자산 등:									
신용 점수:									
변제 계획:		(※신용거래의	경우) "□ 담보유지	비율 미달	달시 매도상환".	으로 기재 가능			
기 타									
■ 적정성 판단 길	별과 및 이유								
종 합			□ 적정	_ <u>!</u>	부적정				
이 유	고객성향에 비해	금융투자	상품의 위	험등급	이 높아	부적정함을 기자	TH		
 참고 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공여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u>일</u> 자 :		고객의 성	성명			: 서명/인			
※ 참고사항									
※(예시) ① () 개 항목 충족/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 점 이상/ 총점 ()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아래 표 참조) 고객 정보 적정성 판단 결과 미충족 사유 대출 용도: □충족 □미충족 () 점									
연 령:		□충족	□미충족	() 점		_		
보유자산 등: □충족 □미충족 ()점									
신용 점수:		□충족 	□미충족	() 점				
변제 계획: 		□충족	□미충족	() 점 초제/	\저			
종 합		□적정	□부적정		총점()점			

청 약 철 회 신 청 서

BINIC투자증권

■ 신청인 인적 사항

계좌 번호			계 좌 명		
주 소				(2 5)
반환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본	인명의계좌 기재)		

■ 청약 철회 대상

- ㅇ (투자성상품)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ㅇ (대출성상품) 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당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상품	□ 투자성	□ 투자성상품: 세부사항 기재 가능					
	□ 대출성	성상품:	세부사항	기재 가능			
				2) 계약서 체결일			
1) 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	년	월	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년	월	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고객 확인사항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함"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성상품] 대출계약 철회 신청시,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의 전	
액상환이 완료되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함
※ <mark>[대출성상품]</mark> 철회의 의사표시 도달 전 담보대상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	=101=1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함
※[투자성상품] 예탁한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포	=101=1
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함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께서 당사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님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 신정인 : (인,

[※]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 계 약 해 지 요 구 신 청 서

BNIC투자증권

▍신청	ŅΙ	인적	사힝
-----	----	----	----

계좌 번호			계 좌 명		
주 소				(25))
반환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본	인명의계좌 기재)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대상 상품명		
계약체결일		
투자성상품	□ 수수료 납부일: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성상품	□ 대출금 지급일:	
계약해지 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 적정성 원칙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17③) (금소법 §18②) (금소법 §19①, ③) (금소법 §20①)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참고자료	

■ 고객 확인사항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함"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 ※ 본 신청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 당사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요구 관련 통지서

BNK투자증권

■ 통지 대상 인적 사항

계좌 번호	계 좌 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서 사용	Ti de la companya de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고객확인 사항

- ㅇ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ㅇ「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님께서 당사와 체결한 위법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주)BNK투자증권

<별표 1> 투자자성향 분류표

□ 투자성 성향 진단 배점

문항/답변	1번	2번	3번	4번	5번	비고
1번	1점(법인5점)	4점(법인4점)	5점(법인3점)	3점(법인2점)	2점(법인1점)	
2번	1점	2점	3점	4점	5점	
3번	1점	2점	3점	4점	5점	복수 답안 가능
4번	1점	2점	3점	4점	5점	
5번	1점	2점	3점	4점	5점	
6번	1점	2점	3점	4점	_	
7번	1점	2점	3점	_	_	
8번	1점	2점	3점	4점	5점	
9번	3점	2점	1점	_	_	
10번	1점	2점	3점	4점	5점	
11번	1점	2점	3점	4점	5점	

※ 점수 계산 방법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 (예) 1번부터 11번까지의 합이 45점인 경우, 45점/50점 × 100 = 90점

□ 점수별 투자성향 등급

점수	성향등급	투자자 성향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편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 추구 ·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있음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음
22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 할 의향이 있음
22점 이하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대출성상품 적정성 판단

적정성	기타 요건
적정	-
부적정	개인 - 연령대 80대 이상, 신용점수 515점 이하

<별표 2> 투자성 상품의 고객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2025. 2. 10. 개정)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가능	0 7LL	투자권유 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가능	ナベゼ	π गठ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 가능	무사권유 가능		

<별표 3>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2025. 2. 10. 개정)

`=				八正(2025. 2. 1			
	투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도	매우 높은 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١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격	구형	안정형
							국고채
		B+ 이하				특수채	통안채
	채권/RP	또는 무등급	BB-~BB+	BBB+~ BBB-	A+~A-	AAA ~ AA-	지방채
						외화RP	보증채
							원화RP
	CMA					발행어음형	Wrap형 CMA
						СМА	RP형 CMA
	건부자본증권 !종, 후순위)	AA ⁻ 미만	AA ⁻ 이상				
CF	?/단기사채	C+이하 또는 무등급	B+~B-	A3+~A3-	A2+~A2-	A1	
파 생 결 합	ELS ^(주1) DLS	*2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원금비보장형 (최대원금손실률 20%초과) *3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원금부분지급형 (최대손실률 10%초과 20%이하) *4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원금부분지급형 (최대손실률 10%이하)		
증	ELB ^(주2)				원금지급형	원금지급형	
권	DLB				(만기1년 초과)	(만기1년이하)	
	ELW	ELW					
주식		신용거래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 <mark>옵</mark> 션					
	ETF/ETN	레버리지, 인버스ETF, ETN	ETF				

일반: 편입자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포트폴리오형: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을 상품별 편입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

		국내주식형랩	국내주식형랩	공모주			
W	주식형	(파생ETF편입	(파생ETF편입	하이일드	-		
r		가능한상품)	불가 능 한 상품)	유형wrap			
а	MMW					MMW	
р	채권형						-

펀드형 사품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따름

ELS/DLS형

자산배분형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

- 주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LS/DLS는 1개 등급 상향
 - ①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②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③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을 초과하는 경우
 - ④ 낙인배리어가 60% 이상 또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베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 ⑤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⑥ 외화표시 ELS·DLS

주2)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ELB, DLB는 위 표의 분류기준과 별개로 5등급으로 부여한다.

※ Wrap의 경우에는 해당 Wrap 내 편입상품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
장외파생상품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그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조가 복잡한 상품)

□ 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E	자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의 의미		
-	-^ 향	위험등급	투자자산 기준	97.5% VaR*	유의사항
	년 당 형	1등급 매우높은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 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	극 자형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 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l험 립형	3등급 다소높은 위헌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_	성	4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상품입니다.
-	추구형	5등급 낮 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 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입니다.
안정	정형	매우낮은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 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T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 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별표 4>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 기준

-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 기준을 정함.
-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왐

- 나. 옵션매수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 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 매도
 - 다. 선도거래

	78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옵션매수, 옵션매도,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주권비상장 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	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투자위험도 분류"의 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 할 필요성 이 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가.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나. 만80세 이상: 초고령투자자

-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 게 적용하는 판매 절차를 준용함
- ►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함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가.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1) 대상: 각영업점 및 콜센터
- 2) 전담창구 운영
 - ① 전담 상담사: 지점장(부서장)이 영업직 직원 중 책임자급 이상으로 1인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고령투자자 전담창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 ▶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 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 창구의 수는 지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
- ▶ 전담창구에는 나중에 고령투자자 또는 보호자와 분쟁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녹음·녹화 시설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 근무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
- ▶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 필

요

▶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자제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나.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1) 본사 전담부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
- 2) 전담인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에서 1인 이상 지정
- 3) 전담부서의 업무: 고령투자자보호 정책마련,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교육

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1) 대상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거래소 상장상품 제외)

라.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포함)

- 1)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보호 측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1)의 검토결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 한 경우 그 사실을 설명서에 명시하고 회사 판매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 판매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 하여야 한다.

나.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1) 점검 부서: 검사부
- 2) 점검 시기: 영업점 정기 감사 (연1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반기1회)
- 3) 점검 항목: 판매프로세스 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여부 전반

-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 (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 ▶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필요
- ▶ 조력자를 지정해둔 경우라면 조력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다.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 대상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의 개최에 대한 광고물의 허위·과장정보 문구사용 금지 - 광고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필수

라.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준수 사항

1) 사후모니터링 실시: 해피콜을 통해 판매적정성 점검

2) 고령투자자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① 고령투자자가 내점하여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을 가입 하려는 경우 상담 직원은 고령투자자의 인지능력 등을 확인하여 투자가 가능한지 파악하고, '고령투자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공모주 청약을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일시에 개설하여 상담이 불가능 한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계좌명의인이 고령투자자가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투자자인 경우에도 작성해야 한다.

3) 투자숙려기간 부여 및 판매과정 녹취

- ① 대상 상품: 금융투자상품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 ② 숙려 기간: 가입 익일부터 2영업일(숙려기간 동안 청약 불가)
- ③ 녹취 범위: 투자성향 파악된 이후부터 판매 전과정 녹취

4) 지정인의 연락처 수집 및 가입사실 통보

①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령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 사실을 문자로 발송 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가족 (지인)의동의 가있는 경우 가능하다.

구분	고객의 지정인 선정	지정인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고객·지정인 동 반 내점	현장에서 직접 지정	현장 확인	동의서 징구
고객만 내점 (파출 포함)	고객이 지정인에게 지점 업무팀으로 유선연락 요청	지정인 여부 확인 녹취	동의서 녹취

- ② 문자발송 정보: 회사명, 고객성명,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명, 가입금액, 회사 연락처 등
- ③ 문자발송 시기: 상품가입 당일 또는 익영업일

④ 문자발송 및 확인 담당자: 금융상품 판매임직원

<문자 발송 예시>

안녕하십니까? (주)BNK투자증권입니다. *** 님의 가족(지인)이신 000님께서 **년**월**일 당사에 +++채권(상품명)에 000원을 가입(청약, 계약 등)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당사 ##지점 담당자***(전화번호)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 시 사전 확인

- ①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직 직원 (지점장, 준법감시 담당자 등)이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하여야 한다.
 - * 준법감시담당자가 영업직원인 경우 업무팀 직원 확인 가능.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 (투자권유 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확인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 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당사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판매직원의 권유절차가 적정한지 가입 체결 전 관리 직원이 사전 확인하여 완전판매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직원 확인 사항]

- 투자성향에 대해 설명하고 적합상품 권유 여부
- 상품설명 전 불이익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상품설명 전 설명서를 교부 여부
-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투자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 투자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 된다는 설명을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투자성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둥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 확인 결과 '부' 에 해당하는 항목은 해당 내용을 재이행 후 확인하고 판매절차 진행

관리직 직원 확인: (인)

6) 초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

※ 초고령자 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 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 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 자제 필요

- ① 투자권유 유의상품 권유 및 판매 자제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 확인
- ② 초고령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초고령 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자 직원(지점장 또는 준법감시담당자)가 동석 또는 유선(파출)로 초고령 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초고령 투자자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가입 시 다음 중 선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 필수)	
□ 가족 및 지인 조력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상품 가입 과정을 설명 듣고 투자를 결정 할 있습니다.	수
□ 당사 직원 조력	가족 및 지인을 지정할 수 없거나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영업점 지점장 또는 관리직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털의
※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초고령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 한 상품이오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
제약이 있는 투자위험이 판매절차가 적용됨을 설명	(또는 유선)하여 해당 상품이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이 크거나 환금 높은 상품으로 80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강 명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또는 유선)하여 해당 상품의 내용과 원금손실 위험 등 주요 위험에	화된
	조력자 확인 : (인)
유선확인 : 고객괴	·의 관계 : 연락처 :	

※ 고령투자자 판매 참고 사항

_	18	적용	연령	디사 사프	내용
구분		고령	초고령	대상 상품	୳୫
상담일지 작성		0	0	모든 금융투자	내점하여 신규로 계좌개설 및 상품 가입을 위하여 내점 하는 경우 상담일지 작성 (공모주 청약 등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일지 생략가능)
	지정인 연락처 수집 ○ ○ ○ ○ ○ ○ ○ ○ ○ ○ ○ ○ ○ ○ ○ ○ ○ ○	고령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시 에는 상품가입 사실을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판매 절차 확인서	지정인 문자발송	0	0	투자권유 유의상품	문자발송 ※ 고객 및 가족(지인) 동의 필수
	투자권유 유의상품 권유 시 사전확인	0	0		관리직 직원이 판매직원의 상담내용이 적정성 여부 사전 확인 후 판매
	초고령자 조력자 확인	-	0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인 또는 관리직 직원이 판매직 직원의 상담의 적정성 및 고객의 인지 및 이해도 등을 확인하여 불완전 판매 예방
숙려기간 부여 및 녹취		0	0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 등 위험이 높은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

고령투자자(대리인) 상담일지

BNK 투자증권

고객명(대리인)	연령	
	-	
□ 위험중립형 □ 안정추	구형 🗆 안전	정형
]확히 설명 할 수 있음		
h른 질문이 적정함		
의 서류작성의 문제가 없음		
금 운영 □ 생활비 마련	□ 노후자금	-마련
)
상품 만기 자금 □ 금융기관	차입 □ 퇴전	지금
)
	□ 위험중립형 □ 안정추· 대확히 설명 할 수 있음 나른 질문이 적정함 의 서류작성의 문제가 없음 금 운영 □ 생활비 마련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기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기 □ 암확히 설명 할 수 있음 나른 질문이 적정함

20 년 월 일

상담자		
		(인)
		(긴)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합니다.
- ②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 (예시: 경영개선권고 등)에 해당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 30년 이상)이며, 만기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환금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생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정기간(예시: 5년 등)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본 금융상품은 특약에 의거 파산절차, 청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외국에서 도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합니다.
- ②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 5년이상)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 ③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생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예시: 5년 등)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 ④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1.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 판단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금융상품은 ____신용평가, ____신용평가 등 으로부터 ____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4.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 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5.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 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 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

I. 목 적

동 기준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금소법 시행령 § 13②~③, 감독규정 § 12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금소법 시행령 §13②)

2. 위험등급 산정 및 검증

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 1) 위험등급 산정은 상품제조부서 또는 상품공급부서(이하'상품부서')가 동 기준에서 정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2) 상품부서가 부여한 위험 등급이 제조회사가 부여한 위험 등급과 다른 경우 상품부서가 제조회사와 위험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이때 제조회사가 사용한 기초자료, 판단 근거를 토대로 상품의 적정성 기준이 검증된 경우 동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식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 정성 검증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감독규정 § 12②제3호
- 3) 상품의 위험등급 적정성 검증
 - 가) 검증 주기: 분기말 기준으로 익익월 말까지 검증
 - 나) 검증 대상 상품군: 제조회사 위험등급을 사용한 펀드 중 해당 분기에 결산이 있었던 개방형/ 추가형 상품 (단, 판매중단 펀드, 판매 대상이 전문투자자인 사모펀드 제외)
 - 다) 검증 대상 표본 선정
 - (1) 연간 판매금액 상위 10개 및 분기말 잔고 상위 10개 펀드
 - (2) 해당 분기에 결산 후 위험도 변경된 편드
 - (3)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펀드
 - (4) 초고령층 및 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한 펀드
 - ※ 단, 검증 대상 상품 군(1)+(2)+(3)+(4)의 펀드를 대상으로 추출한 표본이 이 20개 이하일 경우

분기말 잔고 차상위 펀드를 포함하여 최소 20개의 펀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밖에 급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재 검증 할 수 있다.

3. 위험등급 체계

위험 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1>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4. 위험등급 산정 원칙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 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 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참고 위험요소

- ① 기초자산의 변동성, ② 신용등급, ③ 상품 구조의 복잡성, ④ 최대 원금손실 가능 액,
- ⑤ 환매·매매의 용이성, ⑥ 환율의 변동성, ⑦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 13③) 및 감독규정(§ 12)

2) 시장위험등급

- 「Ⅲ. 상품 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6단계로 산정한다.

3) 신용위험등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 (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표2>와 같이 산정한다.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한다.

<표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장기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BB+~BB-	BBB+~BBB-	A+ ~ A-	국공채 등 ^주	¹⁾ , AAA~AA-
단기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A3	A2	-	A1

주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 정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 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적용한다.
- 해외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외신용 평가등급	AAA~AA-	A+~A-	BBB+~BB	BB-미만
국내신용 평가등급	AAA	AA+~AA-	A+~BBB-	BBB-미만

4) 종합위험등급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5) 외국통화 상품(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 1등급 상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한다.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및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등급을 상 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유동성위험

-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한다.
-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7) 고난도 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 8) 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 등급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 등급이 실제 위험도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1)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정한다.
- 2) 개방형 펀드 등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연 1회(매년 결산 시점) 등급을 재 산정한다.
- 3) 재 산정 주기전이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 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판단 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 산정할 수 있다.
- * (투자자산의 위험 증가) 투자자산이 부실화 되었을 경우(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제18호(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실) 또는 부실자산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된 경우 *(투자환경의 위험도 증가) 투자자산 대상국의 디폴트, 전시상황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상품부서는 신규 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상품 위험 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 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1) 상품부서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2) 판매직원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표3>의 위험 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 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한다.
- ☞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제2호

<표3>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 등급	투자 성향	위험 등급의 의미	유의 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투자형	고위험 자산 투자 자산 가치의 변동 매우 높음 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성 매우 높음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위험 자산에 투자 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2등급 높은위험	적극투자형	고위험 자산 투자 자산가치의 변동 높음 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성 높음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위험 자산에 투자 할 의 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3등급 다소높은위험	위험중립형	고위험 자산 투자 자산가치의 변동 다소 높음 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성 다소 높음	투자에 따른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4등급 보통위험		중위험 자산 투자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5등급 낮은위험	안정추구형	자산가치 변동 다소 낮음 원금 손실 위험 낮음	투자를 목표로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6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저위험 자산 투자 자산가치 변동 매우 낮음 원금 손실 위험 매우 낮음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I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파생상품

- 1) 장내파생상품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위험)을 부여한다.
- 2)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별

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가) 설정 3년 미만 펀드: 편입 대상 자산의 상품 군 기준

등급	국내투자 신규 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 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나) 설정 3년 경과 펀드: 설정일로부터 등급 산정 기준일까지 최근3년간 일간수익률로 산정한 97.5% VaR 기준

구분	1등급(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 다) ETF의 경우 2등급으로 부여하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손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2등급 이상의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 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라)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공모펀드와 동일 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2등급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① 상품구조가 복잡한 경우 ②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외화로 투자하는 경우
-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 하려는 경우는 제조회사 위험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3. 파생결합증권·사채

1)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와 같이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Ş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LITEO S		MR1	MR2	MR3	MR4	MR5	MR6
	시장위험	원금비보장형	원금비보장형	원금부 분 지급형	원금부분지급형	원금지급형	해당
신용위험		(DLS)	(최대원금손실	(최대원금손실률10%	(최대원금손실률	(만기1년이하)	없음
			률 20%초과)	초과 20%이하)	10%이하)		
CR1	B+ 이하	1	1	1	1	1	
CR2	BB+~BB-	1	2	2	2	2	
CR3	BBB+~BBB-	1	2	3	3	3	
CR4	A+~ A-	1	2	3	4	4	
CR5	AAA~AA-	1	2	3	4	5	
CR6	AAA~AA-	1	2	3	4	5	

* 시장위험(MR; Market Risk). 신용위험(CR; Credit Risk)

2)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 손실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위험등급 적용 세부 기준

-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 적용 기준: 20% 초과 2등급 이상, 10~20% 이하 3등급, 10%이하 4등급

- 원금보장 비율* 적용 기준: 원금비보장형 2등급 이상, 원금부분지급형은 3~4등급, 원금지급형은 4~5등급 * 3등급: 90% 미만, 4등급: 90%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LS/DLS는 1개 등급 상향
- ①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②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③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을 초과하는 경우
- ④ 낙인배리어가 60% 이상 또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베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 ⑤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⑥ 외화표시 ELS · DLS

**그 밖의 상품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위험등급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4) 상장지수증권(ETN)

-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5)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2> 의 기준 준용
- 6)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7)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부여한다.
- 8)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ELB, DLB는 만기에 따라 5등급으로 부여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주식은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한다.
- 비상장 주식, 해외거래소 상장종목,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코넥스시장 및 K-OTC 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회사채는 <표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에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해외채권의 경우 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 적용하고,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 등은 2개등급을 상향한다.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며, 상각, 전환 위험 등을 위험등급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RP(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회사의 신용도에 더하여 담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6등급으로 부여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 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 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회사는 특정 투자성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 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IV. 보칙

본 위험등급 산정 기준은 2024년 3월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재 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